

위임장

‘대리인’에게 위임하는 경우

사 건 : 대전지방법원 2017 회합 5006 회생

채 무 자 : 주식회사 리솜리조트

공동관리인 : 김진규, 정상환

수임자:

위 사건에 관하여 특별조사기일,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그
속행기일에서의 출석, 의견진술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
위임합니다.

2018. . .

위임자 주소 :

성명 : 주 채 권 자 명 (인감날인)(인)

* 채권번호(목록번호) 회사작성란 번

※ 별첨 : 인감증명서 1부 - 2018.4.19 (회생계획안 제출일) 이후 날짜 발급분만 유효함
대전지방법원 귀중

* 위임자는 채권목록의 주채권자이며, 특히 회원인 경우는 입회분양계약서 상 주계약자만 해당됩니다.

* 주채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(인감증명서의 주소와 일치)와 성명 기록하시고 채권번호는 회사에서 작성합니다.

* 관계인집회 참석시에는 주채권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